

# OECD 국민계정 실무회의 참가보고서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2005. 10. 11. ~ 10. 14.

(프랑스 파리)

통 계 청

# < 목 차 >

I. 참가 개요 .....	1
II. 회의일정 및 내용 .....	1
III. 회의결과 (요약) .....	5
1. SNA review 진행보고 .....	5
2. 연금제도 .....	5
3. 특정채무 및 채무연장 .....	7
4. 금융서비스 T/F의 최종보고 .....	8
5. 공공부문계정의 조화에 관한 T/F로부터 진행보고 .....	10
6. 민영화와 국유화 .....	11
7. 공기업에서 일반정부의 지분소유에 따른 소득발생 .....	12
8. 공기업의 소득과 손실보전 .....	12
9. Canberra II그룹의 진행보고 .....	14
10. 리스와 라이선스 .....	15
11. 공공과 민간의 합자회사 .....	16
12. 무형비생산자산의 감모 .....	17
13. 비금융자산의 용어와 분류 .....	18
14. 무형 비생산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의 범위 .....	19
15. 경제적 자산의 정의 .....	19
16. SNA에서 최상위 산업분류 .....	20
17. 외국에 과정처리를 위해 보내는 재화 .....	20
18. 자본서비스의 측정 .....	20
<회의자료> .....	붙임

# OECD 국민계정 실무회의

## I. 참가개요

- 회 의 명 :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 주 관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장 소 : 프랑스 파리(Europe빌딩, 라테팡스 소재)
- 기 간 : 2005. 10. 11.~10. 14.
- 한국참가자 : 통 계 청 통계분석과 문 승 태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김 영 태
- 참가자 명단 : 붙임 참조

## II. 회의일정 및 내용

- 10월 11일 (금융통계에 관련 실무)
  - \* WPNA의 개최[F. Lequiller, OECD]
  - \* 안건의 채택
  - \* 전년 회의내용 소개

## SNA 검토 : 재정관련 이슈 [OECD-UNECE 세션]

1. SNA review 진행 보고서(2005년 7월 AEG에서 채택된 다음 AEG의 안건)[C. Carson, SNA review 프로젝트 매니저]
2. 연금
  - 특별 T/F의 보고(T/F 의장)
  - 고용주 상환(Employer retirement schemes)
3. BOPCOM 검토, 특정 채무, 채무연장[J. Joisce, IMF]
  - 저개발국에 대한 증권과 국제수지통계에서 예외적 금융에 대한 토론
  - 특정채무(저금리 또는 장기)
4. 금융서비스 T/F의 최종 보고서[P. Stauffer, OFS - Switzerland]
5. 결론 및 다음 금융서비스 관련 안건

## □ 10월 12일

### SNA 검토 : 일반정부 계정 [OECD-UNECE 세션]

6. 공공부문계정의 조화에 관한 T/F로 부터의 진행보고서[OECD]
7. 민영화와 SPVs [J.P. Dupuis, OECD]
8. 공기업의 소득과 손실보전[P. de Rougemont, Eurostat]

### SNA review: 비금융 자산 (Canberra II)

9. Canberra II 그룹의 진행 보고[C. Aspden, OECD]
10. 리스와 라이선스[A. Harrison, SNA review의 에디터]
11. 공공과 민간의 합자회사 [C. Aspden, OECD]

12. 무형비생산자산의 감모 [C. Aspden, OECD]
13. 비금융자산의 분류와 용어 [A. Harrison, SNA review의 에디터]
14. 무형비생산자산과 기타무형자산의 범위[C. Aspden, OECD]
15. 경제적 자산의 정의 [A. Harrison, editor SNA review]

#### **SNA review: 기타안건**

16. SNA에서 최상위 산업분류 [W. Cave, OECD]
17. 외국에 과징처리를 위해 보내는 재화[A. Harrison, editor SNA review]

#### **□ 10월 13일**

#### **OECD의 국민계정 데이터 관련**

18. 연간 국민계정의 수집과 제공 [C. La Rosa, OECD]
19. 일반정부계정의 수집과 제공[J.P. Dupuis, C. Girodet - OECD]
20. 공기업 분류현황 조사 [J.P. Dupuis, OECD]
21. 일반정부 고용에 관한 프로젝트 [E. Pilichowski, OECD/GOV]
22. 분기국민계정의 수집과 제공 [M. Harary, E. Bolton - OECD]
23. 국민계정에서 고용과 노동시간(F.Lequiller, OECD)

#### **자본스톡, 자본서비스, 생산성 측정 - OECD 세션**

24. 생산성 비교의 개선을 위한 OECD 프로젝트(F.Lequiller, OECD)
25. 자본서비스의 측정(Anne Harrison, editor SNA review)
26. 자본스톡 측정의 사례들
  - 영국에서 정부의 자본스톡의 측정[ONS, 영국]
  - 일본 자본측정 시산과 미래의 방향[K.Nomura, 일본 게이오대]
  - 자본스톡의 새로운 측정방법[M. DeHaan, CBS,네덜란드]

□ 10월 14일

27. 웰빙의 대체 측정[A.Johansson, OECD/ECO/DELSA]

28. OECD회원국의 분기 계정의 개정[T.DiFonzo, OECD]

※ 약어해설

- \* SPC, SPV, SPE(Special Purpose Company, Vehicles or Enterprises )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채권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특수 목적 기업
- \* PPPs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공공과 민간의 합자회사  
PPP는 민간과 공공간에 통제와 위험, 자산으로부터 보상을 공유할 목적의 복잡한 법적 합의체
- \* HIPC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2년 기준 320\$에 못미치는 국가)
- \* ISWGNA :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 \* AEG : Advisory Expert Group(SNA 자문그룹)
- \* EDG : Electronic Discussion Group(SNA 자문그룹)
- \* Canberra II Group : SNA이론 형성 및 주도 그룹
- \* GFS(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 IMF에서 발간하는 정부관련 통계

### Ⅲ. 회의내용 및 결과 (요약)

#### 1. SNA review 진행보고

##### ○ 큰 그림

- 근본적인 변경은 하지 않음
  - 새로운 경제환경 반영
  - 방법에서의 발전
  - 수요자의 요구
- 다른 거시경제 매뉴얼과 일관성 유지
- 2008년 4월까지 승인받을 Rev1.을 준비

##### ○ 2005년 7월 방콕 AEG 회의

- 고용주의 연금
- 공기업으로부터 정부로의 지급 : 누년의 이익배당 등
- 지주회사, SPEs, 신탁 등
- 리스와 라이선스
- 비공식 경제
- 기타 보조단위, 금융서비스 등

##### ○ 2006년 1월 프랑크푸르트 AEG 회의

##### ○ 입안 및 재검토

#### 2. 연금제도

현행 93 SNA에서는 수혜금 지급용으로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보유하며 보험회사 및 사회보장기구 등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형과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비기금형으로 구분함

- 현재 SNA는 비기금형에서 고용주의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수혜자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순현재가치를 주식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함.
- 1995 ESA는 1993SNA와 유사함. 단지, 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험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면 지급을 포함하도록 제안.
- GFSM2001은 정부의 비기금형의무를 부채로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현행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함

- 국가채무의 과소계상의 우려
- 기업회계와 국민계정간의 방법상 괴리

#### ○ 1993 SNA개정이유

- 3개의 주된 이유
  - 비기금 고용주제도는 특히 정부에게 중요함. 고령인구의 관점에서 잘 설정된 장래에 정부의 수행에 대한 더 종합적인 통계정보에 관심
  - 기금형이나 비기금형 제도에 다른 적용은 수익, 순대차, 금융자산이나 부채와 같은 중요한 요소에 다른 “효과”를 야기함
  - 국제적 통계적 표준과 국제 회계표준의 일치

#### ○ 권고방안

정부, 다른 부문의 피고용인을 위해 다른 부문에 의해 운영되는 비기금형 연금제도와 보조계정의 사회보장연금제도와 관련한 스톡과 플로우의 기록



- 기금형 제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나, 추정은 명확해야함.
- 전문가가 수행
- 결론적으로 현행 비기금형 제도의 핵심계정은 바뀌지 않으나, 모든 보조 모델추정이 분리되어 이전계정, 기타 플로우 계정 및 대차대조표에 기록됨.

○ 덴마크 등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견을 발언하였음

### 3. 특정채무 및 채무연장

- 저개발국에 대한 증권과 국제수지통계에서 예외적 금융에 대한 처리 방안관련 토론
- 특정 채무(저금리 또는 장기)

#### ○ 특징

- 일반 가치원칙과의 일관성
- 이행방법의 지침이 없음
- 많이 이행되지 않음

※ 예외적 금융(Concessional Debt) : 정부가 특정목적으로 상업적 대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선진국이 HIPCs 등의 국가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또는 긴 상환기간 동안 대출.

#### ○ 처리 방안

##### a. 무시

- 배열 중 이전요소 생략
- 일반가치의 원칙을 어김

- 이행이 쉬움

b. 경상이전 처리

- 배열의 이전요소 인식
- 대부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전 인식
- 경상계정에 자연적으로 손실이 발생

c. 자본이전 처리

- 배열의 이전적 요소 인식
- 이전은 완전히 처음에 발생
- 경상계정에 자연적으로 손실이 발생
- 대부의 현재가치와 일치, 명목가치와는 불일치
- 연속적인 판매와는 일치하지만 연속적인 탕감과는 불일치

#### 4. 금융서비스 T/F의 최종 보고

- 금융법인의 생산과 금융서비스와 비생명보험서비스의 가격/물량 측정
  - 그들의 활동이 아닌 산출물(금융서비스)의 성격에 기초한 금융법인의 정의. “위험관리”와 “유동형 변화” 활동은 금융기업의 활동성격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하여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에 합산됨
  - 어떤 FISIM도 비금융기업에 기록되지 않음. 이런 단위들에는 오직 명백한 금융서비스만이 기록됨
  - 자신의 펀드에 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단위들은 금융법인으로 간주되어지고, 만약 그들이 고객을 상대로 대부금을 제공하

고 임차인이 갚지 않을 금융리스크가 발생한다면 SNA관점에서는 생산적이 될 것임.

- 오직 하나나 그룹의 단위들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생산하는 단위들은 그들이 완벽한 계정을 갖추고 자산을 획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계정에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금융법인으로 간주됨.
- 기대보유손익은 금융서비스 산출의 측정에 즉시 반영되어서는 안됨
- FISIM은 체계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원초적 예탁(primarily deposit)과 대부를 하는데 있어 묵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이들 수단은 FISIM에 포함되어야함. FISIM계산은  $(r_L^t - rr^t)y_L^t + (rr^t - r_L^t)y_D^t$  참조율(reference rate)의 이용을 포함하는 공식에 기초하여야 함. 이는 FISIM 계산을 권고 받은 SNA93으로 변화를 의미를 포함함. “금융중개에서 총지급할 이자에서 그들 자신의 기금에 투자로부터 수취할 자산수익의 가치를 뺀 수취할 총자산 수익. 이런 수입은 금융중개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 FISIM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참조율은 서비스요소가 없고 FISIM적 용에 금융자산과 부채의 성숙구조를 반영하는 위험성이 없는 참조율이어야 함. 하나의 비율은 지역화폐의 교환에 이용됨. 반면에 다른 비율들은 다른 화폐와의 교환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시장생성과 무역서비스에 관해서, 암묵적으로 가격이 부여된 요소(모든 금융법인에 의한 외환거래와 증권의 매매에서의 마진)는 증권과 다른 증서는 매매되는 목적에 관계없이 만들어짐.
- 암묵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경상금융서비스의 산출물을 위한 직접 디플레이터 없이 물량지표의 변화율은 일반물가지수(예. GDP디플레이터)에 의해 디플레이트 된 예대 스톡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제거해야 함.
- 비생명보험 산출의 직접디플레이터가 없어, 직접물량지표를 계산하여 경상물가지수와 물량시리즈 간의 비율을 얻음

## 5. 공공부문계정의 조화에 관한 T/F로부터의 진행보고

- 세금 수익과 세액공제
  - 세금수익 : 현재 SNA의 규정을 거의 수정없이 유지 : 발생주의를 취하되 거두지 못할 세금은 제외
  - 세액공제 : 현재 SNA에는 규정이 없음. OECD 및 GFS를 참고. T/F는 세금과 사회적 수혜를 제외하고는 분리하여 비용 처리하는 안을 권고하였으나 AEG는 분리하지 않고 Gross로 기재할 것을 권고
  
- 공공/민간/정부부문의 규정
  - 공공부문 통제의 개념 : 단위의 일반적인 법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Decision tree작성. 50%와 같은 숫자 기술은 제외. 개념이 모호하여 더 많은 논의 필요
  - 정부보증 : 대부분이 경제적, 재정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거래로 인식-기록에 있어 보다 명확성 요구
  
- 공공법인과 거래
  - 자본투입과 누년간의 이익환수 등
    - 1안 : 기록에 있어 현재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고 보다 상세히 기재
    - 2안 : 정부계정에 공공법인의 이익과 손실의 발생. 2안이 우세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아직 논의
  
- 민영화, 구조조정기구, 특수목적법인(매우 복잡함)  
자산보증 목적의 SPEs : 금융기관이나 하위 부문에 기록.  
때로는, 정부와 보조적 또는 통합적으로 기록될 수 있음

## 6. 민영화와 국유화

민영화 운영은 1993 SNA에서는 다루지 않음. 이 논문은 주로 ‘ESA 95매뉴얼의 정부 손실과 부채’, ‘GFS 매뉴얼 2001’을 참고함.

주된 권고사항은 직접 민영화(정부단위에 의해 직접 매도)의 경우와 간접 민영화의 경우(다른 공공실체(공기업)에 의해 판매된 경우) 포함함.

전체의 이론 설명은 민영화 운영은 정부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의 변경을 필요로 함.

세 개의 주된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공기업에서 주식과 다른 지분의 매도는 금융계정에서 기록될 금융 이전임
- 2) 비금융자산의 매도는 자본계정에 기록
  - 공기업에 의한 자산의 판매과정에서 정부로의 지분이 있는 모든 경우 (금융적 또는 비금융적) 이때 지분은 금융이전임
- 3) 주식의 매입(국유화)은 몰수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금융이전임

민영화의 주제 하에 몇몇 형태의 통계적 이슈가 고려됨

이 논문의 핵심은 정부 자산 판매의 기록에 있음. 전형적인 “민영화”, 특히 공기업의 주식 지분 판매와 관련됨. 이 매도는 정부에 의해 직접 수행되거나, 또는 특수 목적의 개체일 수 있음. 또한, 모든 통계적 처리에서 이와 반대의 경우인 정부에 의한 자산의 구입(국유화)도 포괄 함.

## 7. 공기업에서 일반정부의 지분소유에 따른 소득발생

누년간 수입에 있어서 배당(superdividend)과 공기업과 준법인에의 자금투입의 처리는 1993 SNA 개정을 위해 선택된 45개 이슈중 하나임. 현재 이런 단위들과 그들을 소유하는 일반 정부의 이러한 흐름의 현재 SNA의 처리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일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정부의 재정 밸런스를 왜곡할 수 있음. 게다가, 이런 흐름의 타이밍과 기록의 차이는 시스템 내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게 함. 그러므로 현재 처리는 국가 경제계정과 국제표준계정의 부조화의 원인임.

공공부문계정의 조화에 대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the Harmonization of Public Sector Accounting)는 대체투자로서 이 이슈의 해결을 맡음. 이 테스크 포스는 이익의 발생(재투자 수입)의 처리를 공법인과 준법인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함.

## 8. 공기업의 소득과 손실보전

- Superdividend : 누년간 수입에 있어서 소유주에게 배당
- Capital Injection : 누년간 운영손실에 있어서 소유주의 보전

현재의 각 기준은 공법인과 이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처리하고 있음

Transactions	SNA 93	GFSM /MDD	SNA quasi-corporation	SNA reinvested earnings
Ongoing dividend	Dividend	Entrepreneurial income	Withdrawal of income from public corporation	Dividend
Superdividend	Dividend	Withdrawal of equity	Withdrawal of equity	Withdrawal of equity
Ongoing subsidy	Subsidy	Subsidy	Subsidy	Subsidy
Injection to cover past losses	Capital transfer/ or equity	Capital transfer	Capital transfer	Acquisition of Equity

\* MDD :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현재의 각 기준은 준법인과 이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처리하고 있음

Transactions	SNA 93	GFSM / /MDD	SNA quasi-corporation	SNA reinvested earnings
Ongoing dividend	Withdrawal of income from quasi-corporation	Withdrawal of income from quasi-corporation	Withdrawal of income from quasi-corporation	Dividend
Superdividend	Withdrawal of equity	Withdrawal of equity	Withdrawal of equity	Withdrawal of equity
Ongoing subsidy	Subsidy	Subsidy	Subsidy	Subsidy
Injection to cover past losses	Capital transfers/ or equity	Capital transfers / or equity (MDD)	Capital transfers	Acquisition of equity

### □ 대안처리평가기준

1. 오직 순가치 중립적 이전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함
2. Superdividend의 왜곡은 피해야 함
3. 법인으로부터 기대되는 모든 현재 수익을 포함함
4. 자본보전의 왜곡은 피해야 함
5. 법인의 계속되는 현재의 손실에 대한 모든 정부비용 포함함
6.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함
7. 추계를 어렵게 하는 것을 피함
8. 누년간의 이익배분과 손실보전을 대칭적 처리
9. 소유주와 소유 법인의 수익과 순저축의 결합
10. 모든 소유주에 대해 유사한 처리
11. 표준의 조화
12. SNA 분류는 자주 개정되지 않아야 함
13. 적절한 추계가 가능해야함
14.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 임퓨테이션은 피함

국제기구기준 간의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 비교성제고를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SNA 변경을 검토함

## 9. Canberra II 그룹의 진행 보고

### □ ISWGNA의 주된 목표

- 각국의 통계청과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생산
- 효과적인 업데이트-2008년 업데이트 발간
- 과정에서 모든 관심단체의 최대한 포괄
- 투명한 과정관리
- BPM과 완벽한 일관성 유지와 GFSM과 최대한 일치시킴

## 10. 라이선스와 리스

- 고정자산
  - 실질 가격이 그들의 서비스 기간 동안 감소하는 고정자산에 관한 계약이 운영리스와 금융리스임
  - 운영리스 :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는 단기리스 등으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금융리스 : 임차자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경제적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사용 계약을 맺는 형태의 리스. 레시(lessee)가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책임을 짐
- 논의 사항
  - 위에서 리스기간은 결정적이 아닌 구분의 지표이며, 금융리스는 자산의 전 기간을 포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
  - 금융서비스는 금융리스와 결합해야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식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 선급(Prepayments)
  - 자산의 리스에 대한 선급은 자산과는 분리된 형태로 나타는가와



관련 : 결론은 아님. 선급은 정확하게 리스기간에 따라 기록되어야 함

○ 토지(천연, 변경 모두)

- 토지를 하나의 부분으로 분리하여 토지를 정지에 원래의 가치에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경우 이 토지를 “생산된”으로 취급

○ 기타 천연자원

- 다른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리스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양어장을 위한 수로나 통신을 위한 전파 스펙트럼 등. 이 경우 자원은 원래의 상태로 소유자에게 반환됨.

- 리스 상태에서 레세의 변형문제. 언제 레서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

○ 기타 허가, 계약, 리스, 면허(License)

- 허가(Permits)

-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 발생할 때 분류 문제(세수로 인식 문제)
- 정부에 의해 발행된 면허는 발생에 따라 면허기간동안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사용권 판매에 대한 계정 기록문제

- 계약

- 물건을 사기로 한 것은 자산이 아님.

잠재적 예외는 상품의 배송약속 시점 시장가치가 계약가격과 다를 경우

미래의 배송에 대해 구매자에 의해 위탁될 때

구매자가 미래의 판매가 확실한 주어진 수준의 가능성에서 요구할 수 있을 때

○ 리스, 라이선스, 계약에 관련된 기본원칙

- 이는 고정자산 및 자연자산의 이용과 특수한 행동이나 활동에 관련된 허가, 상호 합의된 상태 하에 미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됨
- 고정자산이나 자연자산의 소유주와 잠재사용자와의 리스, 라이선스 및 계약은 운영리스나 금융리스의 형태일 것임
- 리스 성격은 시간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잔여가치의 급작스런 소모는 금융리스와 다른 계약조건 하에서 법적 소유자에 의한 소유의 기록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함
- 금융리스와 상품과 서비스의 미래 공급계약은 레세와 제3자사이의 계약에 종속됨. 이들 계약은 시장가치를 가짐.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교환할 수 있고 원시계약의 종속과 구별한 자산으로 나타날 것임

## 11. 공공과 민간의 합자회사

PPP는 민간과 공공 간에 통제와 위험, 자산으로부터 보상을 공유할 목적의 복잡한 법적 합의체임.

대부분의 PPP에서, 자산은 법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수년 동안 특수한 범주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유되어지고 사용되어짐. 그런 후 정부는 대가없이 자산에 대한 경영권과 법적소유권을 획득함  
민간은 법적 소유자이고 생산에서 자산의 이용자임. 공공단위는 대로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해 잔여이윤과 디자인, 질, 용량, 유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PPP가 SNA에 기술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두 가지 문제**

- 어느 단위가 계약 시에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자인가

-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제 리스나 기타 계약과 같은 회계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각 계약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규칙은 아직 없으나 SNA는 리스크를 추산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표준목록을 제공하여야 함

Canberra II와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계속 논의 중임

## 12. 무형 비생산자산의 감모

- 자산으로써 전파 스펙트럼 라이선스
  - 라이선스의 감모는 스펙트럼의 가치증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스펙트럼의 가치는 라이선스의 가치에 따름
  
- 현재 SNA의 처리
  - 다른 무형자산과 일관성(예: 저작권)
  - 순부가가치, 순영업잉여, 순저축에 영향없음
  - 라이선스 홀더의 순영업잉여는 과대계상되어 순저축으로 흘러감
  
- 현재 처리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결론

### 13. 비금융자산의 용어와 분류

- 『유형』과 『무형』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고정자산
  - 변형토지(Converted land), 국방자산(Military asset), 연구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문학 및 예술원본, 기타 지적자산 생산물, 재고에서 정부 국방 및 전략 스톡의 추가에 대해서 논의
  - 용어는 무형 고정자산(intangible fixed assets) → 지적자산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광물탐사 → 광물탐사 및 평가로의 변경을 검토
- 비생산 자산
  - 유형 비생산자산 → 천연 자원
  - 영업권 외에 무형 비생산자산 → 계약, 리스, 라이선스
  -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 용어의 변경과 더불어 계약 등으로부터 분리 와 더불어 세분화함
- 천연자원
  - 천연 토지에 공유수면의 용어를 추가
  - ‘비경작 생물자원’을 아래와 같이 세분
    - 천연산림
    - 기타 작물과 식물자원
    - 물고기과 해양동물의 야생스톡
  - EEZ 내부
  - EZZ 외부
  - 수자원을 대수층(지하수-aquifers)과 기타로 세분
  - 기타 천연자원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전파 스펙트럼과 기타를 추가함

## 14. 무형비생산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의 범위

### ○ 비생산자산의 범위

- 정부가 미래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비생산 자산으로 보아서  
는 안됨
- 이와 아울러 SNA는 이에 명확해야함

### ○ 기타비생산자산

- 1993 SNA에서의 설명은 특허 받지 못한 R&D의 산출은 지출로 기록되고 고정자본형성으로는 기록되지 않아 이 범주는 가외적임
- 이에 따라 이를 제외할 것을 권고함

## 15. 경제적 자산의 정의

○ Rewards(보상) : 현재 기간이나 미래의 기간에서 생산, 소비 또는 축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수단

○ Ownership(소유권) : ① 재화, 서비스, 천연자원, 금융자산과 부채와 같은 개체들의 법적 소유자는 실체들과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하도록 법에서 정의되고, 법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단위  
② 재화, 서비스, 천연자원, 금융자산과 부채와 같은 경제적 소유자는 경제활동 중에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여 실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제도단위.

○ Asset : 자산은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소유자가 상당기간 보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의 보상(Rewards)이나 미래 회계기간 동안에 일련의 보상을 하는 실체임

이상의 정의 및 한계를 상세하게 설명함

## 16. SNA에서 최상위 산업분류

-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편(ISIC Rev.4)에 따라 10개 정도의 범주의 상위분류와 활동별로 보고되는 30~40개의 중분류를 설정하여 국민계정의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NA최상위 분류의 개편 필요

## 17. 외국에 과점처리를 위해 보내는 재화

### ○ 현행 SNA

- 현재 SNA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유권 이전 없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보내지는 재화는 수출 또는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 그러나 기업이 해외의 타기업과 동 재화에 어떤 제조공정을 가하든 계약 체결하고 해외로 반출한 경우, 전혀 다른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뀌는 것으로 처리함
    - 이 경우 반출시 수출, 반입시 수입으로 처리

### ○ 제안된 안

- 처리를 위해 외국에 보내지는 재화는 ‘총계’로 기록할 것인가 ‘순계’로 기록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재화가 다른 처리과정에 보내질 때 소유권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됨
  - 현재의 처리방법과 같이 경우를 분리하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전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 방법
  - 시차(보낸 시기와 처리되어 돌아오는 시기)의 문제가 있음

## 18. 자본서비스의 측정

### ○ 자본서비스

- 만약 모든 고정자산이 시장에서 대여되었다면 이 대여비용은 곧 바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계정 추계자는 자본서비스의 추정치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 자본서비스에는 고정자본소모 이외에 임차한 고정자산, 비생산토지, 천연자원 및 재고자산으로부터의 자본

## 서비스를 포함함

- 자본서비스에 대한 생산성 연구를 위해 학문적 관심이 늘어가고 있음
- 현재 정확한 자본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상세한 자본스톡의 DB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국민계정의 주된 자료의 일부로 발간하지 않음

## ○ 권고

- 자본서비스는 국민계정에 소개되어야 하나 주된 계정이 아닌(어떤 국가가 그들의 추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SNA는 자본서비스의 개념과 생산에 있어 그들의 기여를 설명하여야 함.
- 실질상 중요한 문제로 혼합소득은 자본과 노동 보상의 종합측정을 가능하도록 자본과 노동의 요소로 분리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자본 서비스측정은 그들이 귀금속을 제외한 비금융 자산에 국한된다는 개념 하에 종합되어야 함

현SNA		제안	
사용	원천	사용	원천
비용자 보수	부가가치	비용자 보수	부가가치
생산과 수입세		생산과 수입세	
보조금		⇒ 보조금	
영업잉여/혼합소득		총영업잉여/총혼합소득 구성: 시장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부터 자본서비스 - 이 중 고정자본소모 비시장생산으로부터 고정자산소모 - 이 중 고정자본소모 지하자원과 기타 자연자산으로부터 자본서비스 비생산토지로부터 자본서비스 재고로부터 자본서비스	